

# 서울특별시 모자보건 조례안

(김희걸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50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7일

발 의 자 : 김희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홍성룡, 최웅식, 이병도, 문병훈  
정재웅, 박순규, 김호평, 노승재  
문장길, 김경우, 권영희, 이정인  
이성배, 김평남, 신정호 의원  
(15명)

## 1. 제안이유

모성(母性)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,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
- 나. 세부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- 다.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- 라.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마. 모자보건사업, 임산부의 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모자보건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

## 서울특별시 모자보건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임산부”란 「모자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.
2. “모성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.
3. “영유아”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4. “미숙아”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.
5. “선천성이상아”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.
6. “모자보건사업”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
7. “난임”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.
8. “고위험 임산부”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(조기진통, 분만 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 전치태반, 절박유산, 양수과다증, 양수과소증, 분만 전 출혈, 자궁경부 무력증)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모성

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세부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모자보건사업)**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
2. 고위험 임산부,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
3.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, 시술비 지원
4.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, 조제분유 지원
5.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
6.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임산부의 날)**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7조(재정지원)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부처, 자치구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○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비용(≒500,000천원)

-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비용 =  $\sum_{i=1}^5$ (연간 임산부의날 행사 개최비용)<sub>i</sub>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년~2024년)

- 연간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비용(2018년 임산부의 날 행사 지원단가 준용)  
= 100,000천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     여차민

주    무    관      채소영

☎ 02-2180-7944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

**붙임 : 조례안 관련 서울시 모자보건사업 현황**

## 서울시 모자보건사업 추진 현황

- 추진기간 : 2019.1.~12월
- 대 상 : 서울시 거주 임신부 및 영유아, 난임부부 등
- 세부사업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사업명	대상 및 내용	'19년 예산	비고
모자보건사업	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	임신을 원하는 44세 이하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대상으로 체외수정, 인공수정 등 지원	403	1회당 50만원 최대10회
	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사업	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 고위험 임신부가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	754	1인당 300만원 이내
	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	보건소 등록 임신부 및 영유아	53	산모수첩 및 어린이 건강수첩 제공
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사업	미숙아,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	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 (다자녀는 소득수준 무관)의 미숙아, 선천성 미숙아에게 의료비 중 기준지급액 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	1,179	미숙아는 1인당 3~10백만원, 선천성이상아는 5백만원
	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	출생후 28일 경과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검사시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검사비용 지원 및 환아 관리	830	검사비(22~41천원), 환아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등
	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	외래검사시 기준중위 소득 180%이하 검사비용 지원(다자녀는 소득수준 무관)	368	검사비(14~70천원), 보청기 131만원
저소득층 영유아 건강 검진 지원	저소득층 영유아 건강 검진 지원	저소득층 만6세 이하 영유아건강검진 비용 지원	160	의료급여수급자영유아 지원
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	서울아기 건강 첫 걸 음 사 업	임신~출산, 만2세까지 우리아이 방문간호사의 체계적인 가정방문 건강관리 지원	394	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	산 모 신 생 아 건 강 관 리	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(소득 및 단태아, 쌍생아, 다자녀 여부 따라 다양한 시간과 지원형태)	28,331	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
서울시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	서 울 시 남 녀 건강출산 지원사업	건강한 임신을 위한 남녀 임신 준비프로그램 지원 및 엽산제 제공 등	570	4개 구 운영
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	저소득층 기저귀·조 제 분 유 지원	만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 층 가구에 기저귀,조제분유 지원	3,767	기저귀 월64천원 조제분유 월86천원
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	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	시범사업 자치구 난임 부부 한의약 난임치료(한약, 시술, 상담) 지원	590	시범사업(12개구)

자료 : 서울시 내부자료 재구성(예산액은 예산서 기준 작성하였고, 국비는 별도 구분하지 않음)